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」 제정 안내

1. 규정명 :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」
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,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의거, 규정 제정

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마련
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

항 목	내 용
제 1 장 총칙	1. 목적 2. 적용범위 3. 용어의 정의 4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
제 2 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	5.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을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수립 6. 내부통제 조직 구성 7. 이사회 8. 대표이사 9. 임직원 및 조직
제 3 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	10.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11.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12.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13. 사후 관리 단계에서의 준수사항 14.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15. 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수행 원칙 16.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17.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18.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, 개인정보 관리 19. 금융상품등에 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
제 4 장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	20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21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설치 및 운영 22.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23.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직무 24.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
제 5 장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	25.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6. 임직원등의 내부통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
제 6 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	27.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

제 7 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	28.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29.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
제 8 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	30. 내부통제규정의 제정 · 변경
제 9 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	31.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

4. **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**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

5. **시행일자 :** 2021년 9월 25일 (2021년 7월 20일 이사회 승인)

6. **적용 대상(범위) :**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회사의 내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,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